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554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윤형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재용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평택시 D 답 1,986㎡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3.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251,000,0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000,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평택시 D 답 1,986㎡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251,000,0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000,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가합58226호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29. “C은 원고에게 326,000,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C이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5350호로 항소심이 계속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7. 22. C의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 E, F, G는 2016. 10. 13. H로부터 평택시 D 답 1,9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29.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9.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10억 4,400만 원의 1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을 매수하였음에도 아들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채무자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등 금전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여계약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위와 같은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3억 8,23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의 지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5억 5,292만 원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7,500만 원을 회수하여 피보전채권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의 가액 범위 내인 251,000,032원(= 이 사건 선행판결의 판결금 원금 326,000,032원 - 7,5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피보전채권의 금액인 251,000,032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2. 4.

8.자 J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13억 8,230만 원 중 9억 원은 I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충당되었는데, 위 대출계약의 명의자는 C이 아닌 피고인 점, ②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라 한다)는 피고와 E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위 대출이자 중 피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C이 대납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인인 H 명의의 계좌로 2016. 12.

12.부터 2016. 12. 28.까지 합계 1억 4,000만 원이 매매대금으로 이체되었는데 위 매매자금의

출처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는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중 피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9,292만 원[= (13억 8,230만 원 - 9억 원) × 2/5]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점, ④ E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 명의가 피고 앞으로 마쳐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와 C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강원철원경찰서는 2022. 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에 있어서 C의 자금이 일부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의 처 명의로 일부 자금이 지급되었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등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김진하, 판사 염정원